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R&D 생산성 제고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연구산업의 분야를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함(제2조)
- 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함(제3조 및 제4조)
- 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의 요건과 절차, 효력상실, 변경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성능평가결과서의 내용,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시·도지사의 신청 및 의견 청취 등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제12조 및 제13조)
- 바. 연구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협
회와 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5
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전담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산업 통계의 작성·관리,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업무, 연구산업진
흥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제2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6. 11. ~ 7. 2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문연구산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연구관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연구개발 기획, 연
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연구장비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연구개발에 이용되
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연구재료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
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은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

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
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연구시설"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
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
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
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의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 작성을 위하여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연구산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
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연구산업의 업종별로 전문인력 보유 및 매출액·납품 실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문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시설을 갖출 것

다. 연구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상일 것

2. 연구관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상일 것

3. 연구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연구장비(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주변시스템 및 부품도 포함한다)가 1개 이상이고 해당 연구장비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4. 연구재료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사업자가 개발한 연구재료가 1개 이상이고 해당 연구재료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 검사 및 분석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시설을 갖출 것

다. 연구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상일 것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일 당시 창업 후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 연구사업자”라 한다)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및 개발·납품 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연구사업자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및 개발·납품 실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문연구산업·연구관리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 등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연구장비산업·연구재료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발 및 납품 실적이 없을 경우 계약서 등 개발 진행 중인 내용·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고의 보완 및 효력상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사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사업자가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서류가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행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2.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연구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및 개발·납품 실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7조(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영업소 소재지
4. 대표자
5. 신고업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변경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한 사항

② 연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변경된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8조(갱신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신고의 효력을 유지하

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가 수리된 경우 갱신신고의 효력은 기존신고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④ 신고의 갱신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평가 수행절차
2. 성능평가 항목
3. 성능평가 항목별 기준

4. 성능평가 항목별 적합성

⑤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결과서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전문성을 인정한 기관·단체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5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가.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나.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및 시험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4.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서 제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에 앞서 평가기관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관한 사유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을 것
2. 연구사업자의 수요 기업·기관 또는 연구사업자와 협력하여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
3. 연구산업의 성과를 해당 연구산업진흥단지 소재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지역혁신역량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연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입주하여 집적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흥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진흥단지의 지정 목적
3. 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흥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단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관한 사유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진흥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해당 진흥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및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업무의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인정한 기관·단체

제15조(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회를 설립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예산계획과 전년도 실적의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회의 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예산계획과 전연도의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업무)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및 기반 조성
3. 연구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고·제출의 요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등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요청 범위 및 기한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인정한 기관·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
2. 법 제6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업무 등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수립·시행

4. 법 제9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을 위한 사업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불공정한 사례
조사·분석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고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2 제2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

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산업 세부 업종 분류(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1조 관련)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연구산업 세부 업종 분류(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세부 업종	범 위
주문 연구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약학, 기타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기타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다학제에 걸친 융합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 관리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전략 수립, 사업·과제 기획, 기술·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관리(진도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관리·활용, 기술이전·거래, 기술 투·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 관리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 장비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영상처리 장비, 광파발생/측정장비, 방사선발생/측정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제조/분석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물리적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 길이/위치측정장비,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표면특성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기타연구장비 개발업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 재료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기타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75	85	1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50	70	100